

법무상식 2020년 5월 통권 제331호

www.jeonnam.go.kr

CONTENTS

2	새로운 판례
12	법령해석사례(법제처)
36	행정심판 재결사례
50	행정소송 판결사례
57	생활법률 상담사례
70	법무단신
85	최근 개정 시행법령
90	최근 제정 자치법규
102	솔로몬의 재판



●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7도13409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였더라도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를 통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자에 대하여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였고, 위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도과 전 검사가 위 사기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한 사례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CCTV 수당을 통화가 아닌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 구입권 형태로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성 여부

* 대법원 2016다7647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 된다고 볼 수 있는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 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또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 ☞ 회사가 CCTV가 설치된 버스 승무자에게 CCTV 수당을 1일 1만원씩 통화(현금)로 지급하여 오다가, 노동조합과 “실비변상조로 장갑, 음료수, 담배, 기타 잡비 명목으로 1일 1만원에 상당하는 피고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을 교부하되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건에서, 실제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통상임금성이 인정되고, 실비 변상 명목으로 지급되거나 물품구입권의 형태로 교부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한 사례



● 친부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하였다는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0도2433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 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등 참조).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반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에서 친부로부터 3회에 걸쳐 강제추행 등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미성년자(진술 당시 만 13세)인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사안에서, 수사기관 진술 자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등에다가,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번복된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 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 1층의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자신의 영업장 내부공간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17다220744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단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는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조상 이를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중 일부나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이를 점유·사용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42277, 96다42284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다30279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2608 판결 등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 ㉮ 원고는 상가건물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상가건물 1층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그곳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1층 복도와 로비를 점유하여 골프연습장의 내부공간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에게 복도와 로비의 인도청구와 함께 이 부분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임.
- ㉮ 대법원은, ① 피고가 이 사건 복도와 로비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었고 상가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복도와 로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로써 부당이득이 성립하고, ② 이 사건 복도와 로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임대할 수 있는지는 부당이득의 성립과 관련이 없으며, ③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무단 점유·사용에 대하여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해당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그 부동산 사용에 관하여 약정되었을 대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지 해당 부동산이 임대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종전 선례를 변경하고, 종전 선례에 따라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일부)하였음.
-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복도, 계단, 로비 등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공용부분은 그 용도대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없으므로 공용부분의 무단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는 발생할 수 없고, 공용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수익권은 제한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며, 설령 공용부분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이 인정되더라도 그 청구는 관리단이 아니라 구분소유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종전 선례와 이 사건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는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의견이 있음.
- ㉮ 이에 대하여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과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음

● 재판상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공동양육을 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 2018므15534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및 제5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3) 및 5) 등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법원이 친권자를 정하거나 양육자를 정할 때 반드시 단독의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정할 때에는 그 부모가 부정행위, 유기, 부당한 대우 등 침해한 갈등이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이혼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허용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공동양육의 경우 자녀가 부모의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자녀는 두 가정을 오가면서 두 명의 양육자 아래에서 생활하게 되어 자칫 가치관의 혼란을 겪거나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특히 자녀가 교육기관 등에 다니게 되면 거주지를 주기적으로 옮기는 것은 자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부모 사이에 양육방법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동양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그 갈등이 자녀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환경이 비슷하여 자녀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이혼 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한 사건에서, 민법 관련 규정상 재판상 이혼의 경우 공동양육자의 지정은 가능하지만 그 허용 여부는 여러 기준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공동양육을 지정하기에 적절한 사안이 아님을 이유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양육비 관리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예금계좌 개설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생활에 유익한 법무상식

법령해석사례(법제처)

사례 1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범위(「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등 관련)

질의요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일부를 제외하고 같은 면적의 산지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에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으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인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 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각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본문)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도록 하면서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제2호),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제3호), 산지의 형태 및 임목(林木)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제7호) 등을 허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의 위치와 현황은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나 위치와 관련하여 산지전용면적의 축소(제3호)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제4호)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위치나 면적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이 해당 산지의 이용계획이나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 자체에만 변경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산지관리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은 동일하나 산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달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산지의 경계가 변경되더라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대부분을 다른 산지로 위치를 변경하더라도 신고로 갈음할 수 있게 되어 산지의 형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 ③ (생략)

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
5.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의 변경

⑤ ~ ⑦ (생략)



사례 2

민원인 -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기준인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질의요지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 3동을 증축하려는 경우(각주: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이 유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여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은 정하고 있으나, 건축신고 대상 기준에서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하나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증축”이라고 정의하여 대지를 기준으로 증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각각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하면서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를 건축면적으로, 이들 연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증축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제11조)를 받아야 하지만 소규모 증축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안전·기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제14조) 규제를 완화한 것인데, 만약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개별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본다면 대지를 기준으로 85제곱미터를 아무리 초과하는 증축이더라도 동일 대지 내에 여러 건축물로 쪼개어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게 되어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을 향상시키려는 건축법령의 목적에도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대지에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 3동을 증축하려는 경우 증축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대지를 기준으로 90제곱미터이고,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기준인 85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 5. (생략)

② ~ ⑤ (생략)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 19. (생략)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2. (생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각 호 생략)

5. ~ 10. (생략)

②, ③ (생략)

〈관계 법령〉

사례 3

민원인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등 관련)

질의요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93조제5항의 특례 적용 대상인 “기존의 건축물”에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가설건축물이 포함되는지?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특례 적용 대상인 “기존의 건축물”에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회 답

가. 질의 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기존의 건축물”에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기존의 건축물”에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 전단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개정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같은 법령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이하 “건축기준”이라 함)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만 하여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의 건축물까지도 제·개정된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볼 경우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기존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려는 것인바, (각주: 법제처 2017. 4. 20. 회신 17-0129 해석례 및 법제처 2012. 5. 11. 회신 12-0243 해석례 참조.) 해당 규정에 따른 특례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정의하면서 토지에 정착할 것을 기본 요건으로 규정(제2조제1항제2호)하고 있는 반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과 달리 구조 등 설치 기준, 설치목적 및 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하여 다른 규율체계를 두면서 특히 존치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제한(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7항)하고 있고, 가설건축물의 임시적인 속성 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적용되지 않는바, (각주: 법제처 2019. 2. 8. 회신 18-0584 해석례 참조.) 이와 같이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을 구분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체계를 고려할 때 건축기준 적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5항의 “기존의 건축물”에 “기존의 가설건축물”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르면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5조,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는 기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기준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 같은 규정의 “기존의 건축물”에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특례규정은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의 건축물까지도 제·개정된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볼 경우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기존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려는 것인바, 해당 규정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22조에서는 건축주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로부터 해당 건축물이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제1항·제2항),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제3항),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등 각 호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시사용승인을 받더라도 사용승인 전까지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해당 건축물을 적법하게 사용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도 의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임시사용승인은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 임시사용승인기간이 지나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바, 이러한 미완성의 건축물에 대해 장래에 나머지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93조에서는 법령의 개정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건축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에 대하여 기존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제5항) 외에도 재축 또는 대수선(제1항), 증축 또는 개축(제2항),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제4항)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같은 조 제5항의 “기존의 건축물”에 “기존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볼 경우 이와 같은 특례가 모두 적용되게 되는바, 전체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미완성의 건축물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축, 대수선, 증축, 개축 등 새로운 건축 공사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기존의 건축물”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하며, 건폐율·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

2.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3.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② ~ ④ (생략)

⑤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업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후단 생략)

⑥·⑦ (생략)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21. (생략)

② (생략)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단서 생략)

1. 2. (생 략)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 ~ ⑥ (생 략)



사례 4

민원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단서의 의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성되는데, 같은 법 제71조제2항에서는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에서는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중 하나로 연금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연금소득을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이라고 하면서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에서는 연금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연금소득에 포함되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함)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각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공적연금소득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연금소득금액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함)에서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연금소득금액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은 공적연금소득의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에서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소득월액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소득의 범위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단서는 2011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2997호로 일부개정될 당시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서는 공적연금소득을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한 연금 기여금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명확한 규정 없이 연금소득에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연금 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소득에 포함”한다고 규정(각주: 2011. 6. 30. 대통령령 제22997호로 일부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였고, 2012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규정된 것인데 전부개정 당시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을 산정하는 내용의 변경은 없이 표현만 바뀌었다(각주: 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개정될 당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기 위한 개정이 함께 이루어짐.)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20조의3제3항에서 연금소득금액의 산정 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건강보험료는 그 입법 목적, 법적 성격, 납부의무자, 반대급부의 유무 등에서 조세인 소득세와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를 소득세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와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각주: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50160 판결례 참조)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 4. (생 략)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생 략)

②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3,400만원을 말한다.

③ 소득월액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자료의 반영 시기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례 5

민원인 - 경력평정 시 종전 기능직공무원 재직경력의 인정 여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및 별표 3 등 관련)



질의요지

2013년 12월 12일 전에 지방공무원인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공무원 직종개편(각주: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기능직은 일반직에, 계약직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구분체제로 단순화함.) 이후 지방공무원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어 근무하던 중 의원면직한 사람이, 그 후 지방공무원인 일반직 행정직군 9급으로 신규임용되고 승진하여 8급인 현 직급에서 경력평정을 하는 경우, 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53호로 개정되어 2013. 12. 12.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직종개편 이전에 기능직공무원 전신직군 9급으로 재직한 경력은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1조의6 및 별표 3 제1호라목1)에 따른 정 경력(직군이 다른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직종개편 이전에 기능직공무원 전신직군 9급으로 재직한 경력은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및 별표 3 제1호라목1)에 따른 정 경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이 영 시행 전의 기능직 공무원이 이 영 시행 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에는 기능직공무원으로서의 재직 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 제31조의6,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종전의 기능직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이 향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채용, 승진 등의 인사관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지, 종전 기능직 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 직종개편 이후 신규임용되는 경우 직종개편 이전과 비교할 때 경력평정에서 경력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무원 직종개편 이전의 기능직공무원으로서의 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및 별표 3을 적용해야 하는데, 같은 별표에서 직종이 다른 경우에는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또는 경력직이나 특수경력직으로 공무원의 종류를 명시(각주: 종전 임용령 별표 3 제1호가목2), 같은 호 나목2),5),6) 및 같은 호 다목2),3),8),9) 참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직군이 다른”이라고 규정한 것은 직종이 같은 공무원 중 직군이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 해석인바, 이 사안의 기능직공무원 전신직군 9급으로 재직한 경력은 같은 별표 제1호라목1)에 따른 정 경력인 “직군이 다른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별표 제1호다목3)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공무원의 구분, 신규임용, 승진, 복무, 휴직, 신분 보장 및 징계 등 공무원 신분관계 전반에 대하여 1963년 11월 1일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거의 동일하게 규율되어 왔고, 특히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 인적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승진, 경력인정 등의 제도 운영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기능직공무원 등을 폐지하는 공무원 직종개편 시기도 일치시켰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 직종개편 이전의 종전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재직 경력 인정 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은 직종개편 이전의 기능직공무원 재직 경력을 직종개편 이후 신규임용된 일반직공무원의 경력평정에서 인정받으려는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5급 이하 경력환산율표) 제1호다목(3)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동일 계급 상당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재직 경력인 경우에만 병 경력이 적용되어 60퍼센트의 경력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뿐, 직종개편 이전의 바로 아래 계급의 기능직공무원 재직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신규임용이나 승진의 경우와 달리 이 사안의 경력평정 시 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6조제1항 후단의 “이 경우 부칙 제7조제1항의 표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은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 기능직공무원 전산직군 9급으로 재직한 경력을 일반직공무원 재직 경력으로 보아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3 제1호라목1)의 정 경력인 같은 직종 내 직군이 다른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53호로 개정되어 2013. 12. 12. 시행된 것을 말함)

부 칙

제6조(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이 영 시행 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에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재직 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 제31조의6,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부칙 제7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은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②·③ (생 략)

제7조(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에 따른 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생 략

전신직군 전기직렬 기능9급 지방전기원

관리운영직군 전기운영직렬 9급 지방전기운영서기보

생 략

② (생 략)

「지방공무원 임용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1조의6(경력평정) ①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경력평정은 평정 기준일부터 경력평정 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별표 3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경력기간에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정점을 곱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1. 2. (생 략)

③·④ (생 략)

[별표 3]

경력환산율표(제31조의6제2항 관련)

1. 공무원 경력

경력

환산율

가. 나. (생략)

다. 병 경력

1) 직군이 다른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생략)

3)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4) ~ 9) (생략)

60퍼센트

라. 정 경력

1) 직군이 다른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 다만, 기술직군의 경우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현직급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현직급의 바로 아래 계급에 상당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삭제

30퍼센트

2. (생략)

비고 (생략)

〈관계 법령〉

사례 6

민원인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 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 등 관련)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각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 지도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자격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지 않고 하나의 지도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각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전제함.)이 같은 법 제146조에 따라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회 답

이 사안의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에 따라 연수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이 유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에서는 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같은 법 제145조에 따른 지도사 등록을 하기 전에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면서 “제1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연수교육 제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무경력 외에 같은 법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지도사 자격을 가진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각 호에서는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관련 분야별 자격자를 구분하여 일부 면제되는 시험과목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아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에 따른 연수 교육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같은 규정에서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이라는 요건을 둔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제14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자격시험의 일부면제) ① 법 제143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 및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공통필수 I

및 공통필수Ⅱ 과목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전자 직무분야(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4. 공학(건설안전·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과목

7.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Ⅲ 과목

8.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공통필수Ⅱ 및 공통필수Ⅲ 과목

②、③ (생략)

제107조(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019-115호,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1. 23. 청구인에게 한 장애등급 결정처분을 취소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0. 4. 장애등급심사를 신청하여, 2018. 11. 23. 피청구인으로 부터 (양측)하지기능장애 4급 판정을 받고, 2019. 1. 22.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8.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의 재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원 심사와 같은 결정을 통보하자, 2019. 5. 16. 이 사건 장애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1. 23. 청구인에게 한 장애등급 결정처분을 취소변경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청구인은 2018. 2.부터 걷지 못하는 모습으로 홍추 5~6번의 결핵성 척추염 진단을 받은 후 2018. 3. 2. 수술 치료를 받았고 현재 양측 하지마비(trace-zero)로 인한 보행장애에 대한 재활 치료를 하고 있다. 신경인성방광으로 유치카테터(오줌의

흐름을 위해 삽입하는 장치) 적용 중이며 휠체어 보행 중이고, 의자/침대 이동 또한 이동 동작의 전 과정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태이다. 스스로 앉기 등의 동작도 불가능하여 일상생활 동작 전 영역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청구인은 양측 하지기능장애 4급 결정을 취소하고 양측 하지기능장애 2급으로 변경해 줄 것을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

- 1) 제출한 장애진단서 및 진료 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두 다리의 근력저하 상태로 치료경과 및 임상증상 척추 MRI 및 CT상 병변 양상, 진료기록지상 근력등급, 추가 제출한 자료상 다리의 움직임 및 기능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
- 2) 이미 제출한 자료 및 추가 자료를 검토하여 재심사한 결과 결핵성 척추염 및 척수 병증으로 2018년 9월 소견서상 양측 하지의 근력이 0~1등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남대병원 2018. 3. 진료 기록상 양측 하지 근력이 3등급으로 평가한 이후 악화로 인정한 객관적인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MRI 및 CT상 척수 병변 상태, 2018. 11. 제출한 기타 자료상 양측 하지의 물리적 상태 및 움직임 정도, 치매가 가중된 상태인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측 하지 전체의 근력이 2등급 이하인 경우 또는 한 다리가 완전마비(근력 0, 1등급)인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의견에 따라 청구인의 원 심사와 이의신청에 대하여 ‘양측 하지 기능장애 4급’ 판정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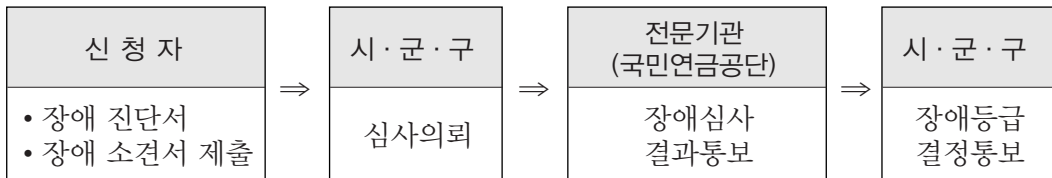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 2)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20호) 제3조, 제9조
- 3)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51호) 기능장애

5. 판 단

가.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장애등급 심사결정 절차〉



- 1) 청구인은 2018. 9. 21. 다음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2018. 10. 4.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심사를 위해 제출하였다.

□ 장애진단서

진단기관	기관명	OO요양병원	진단일	2018. 9. 21.
진단 대상자	성 명	* * *	성 별	남
	주민등록번호	430520-1 * * * * *		
장애상태	장애유형	양측 하지마비		
진단 소견	상기인은 2018. 2.부터 걷지 못하는 모습으로 흉추 5-6번의 결핵성 척추염 진단 하에 2018. 3. 2. 수술적 치료를 받은 분으로, 현재 양측 하지마비(trace-zero)로 인한 보행장애에 대한 재활치료 중입니다. 신경인성방광으로 유치카테터 적용 중이며 휠체어 보행 중이고, 의자 /침대 이동 또한 이동 동작의 전 과정에서 한 명의 최대한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스스로 앉기 등의 동작도 불가능하여 일상생활 동작 전 영역에 있어 타인의 최대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2)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장애등급 심사를 요청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 결과 및 소견을 통보받아, 2018. 11. 2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장애등급 결정을 통지하였다.

□ 원 심사

날 짜	내 용
2018. 10. 04.	장애등급심사 요청서 접수 - 국민연금공단 지사
2018. 10. 05.	장애등급심사 접수 - 국민연금공단 심사부서
2018. 10. 10.	1차 의학자문회의 상정 (자문의사 1, 2)
2018. 10. 10.	직접진단 통보
	통보내역 〈제출한 장애진단서 및 자료 등을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양측 다리의 근력 및 기능정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직접진단을 요청합니다.〉 1. 지체장애용(하지기능장애) 소견서 기재사항 : 양측 하지의 구체적인 근력등급, 근위축 상태, 이동능력수행(앉고 서기, 보조기 사용 여부,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및 일상생활 수행정도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기타 의사 소견란에 기재 바랍니다. 또한 검사시 대상자의 협조정도, 수행태도 등에 대해서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가 동영상 자료 제출로 대체하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동영상 촬영으로 직접진단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영상촬영 및 심사활용 동의서’를 받은 후 동영상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촬영 시 참고사항〉 - 서 있는 자세에서 양측 하지의 전면, 측면, 후면 모습, 침대(바닥)에서 의자로 이동하는 모습, 바닥에서 앉았다 일어서는 모습, 보행하는 모습, 계단에서 보행하는 모습,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양측 발목을 발바닥과 발등 방향으로 최대한 구부린 모습, 누워서 다리들기, 무릎을 최대한 구부렸다 펴는 모습 등 * 다리의 근위축 상태 및 기능 정도 확인을 위해 피부가 보이도록 반바지 입고 양말을 벗고 촬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 짜	내 용	
2018. 11. 05.	자료보완 결과보고 - 국민연금공단 지사	
2018. 11. 08.	2차 의학자문회의 상정 (자문의사 3, 4)	
2018. 11. 23.	심사결정 및 통보	
	심사결과	(양측) 하지기능장애 4급
	심사소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기능장애는 척수(척추 안의 중추신경)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인한 마비에 의해 팔·다리의 운동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지 못할 정도이어야 합니다. 다만, 감각 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으며 물리적 검사 이외 영상의학 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이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서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기능장애 최저 인정기준인 근력검사 결과 3등급(정상 근력의 약 50% 정도) 이하인 경우에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제출한 장애인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장애 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두 다리의 근력저하 상태로 치료경과 및 임상증상, 척추 MRI 및 CT상 병변 양상, 진료기록지상 근력등급, 추가 제출한 자료상 다리의 움직임 및 기능정도 등을 고려할 때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측 하지 기능장애 4급으로 판정합니다. 향후, 장애상태 변동가능성을 감안하여 2년 후 재판정이 필요합니다.

-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 2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국민연금공단의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따라 2019. 2. 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원 심사와 동일한 결정을 통지하였다.

□ 이의신청심사

날 짜	내 용
2019. 01. 22.	장애등급심사 요청서 접수 - 국민연금공단 지사
2019. 01. 22.	장애등급심사 접수- 국민연금공단 심사부서
2019. 01. 25.	3차 의학자문회의 상정 (자문의사 5, 6)
	심사결정 및 통보
	심사결과 (양측) 하지기능장애 4급
2019. 02. 08.	심사소견 1. 이의신청 사유 (양측)하지기능장애 4급 판정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 하였습니다. 2. 등급판정 기준 마비에 의한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으며,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지 전체의 마비정도가 기능적이지 못할 정도인 근력 3등급 이하(정상:5등급)인 경우에 한하여 판정합니다. 하지기능장애 3급은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로 근력 0, 1등급일 경우가 해당하며, 양측 하지 전체의 근력이 2등급인 경우 하지기능장애 2급에 해당합니다. 3. 심사결정 소견 기 제출한 자료 및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재심사한 결과 결핵성 척추염 및 척수병증으로 2018년 9월 소견서상 양측 하지의 근력이 0-1등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남대 병원 2018년 3월 진료기록상 양측 하지 근력이 3등급으로 평가한 이후 악화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MRI 및 CT상 척수병변 상태, 2018년 11월 제출한 기타 자료상 양측 하지의 물리적 상태 및 움직임 정도, 치매가 가중된 상태인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측 하지 전체의 근력이 2등급 이하인 경우 또는 한 다리가 완전 마비(근력 0, 1등급)인 상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애등급의 상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심사결과 따라서 양측 하지 기능장애 4급으로 판정합니다. 향후, 장애상태 변동가능성을 감안하여 2년 후 재판정이 필요합니다.

- 4) 청구인이 2019. 1. 29.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OOOO병원장에게 청구인의 장애진단서 등 각종 진단자료를 첨부하여 장애등급 자문을 의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소견을 회신 받았다.

□ 자문결과

자문 결과	장애등급 결정	양측 하지 기능장애 2급
	OO OO병원 (***)	환자는 2018. 2. 20. 경부터 시작한 양측 하지의 감각과 근력의 저하가 시작되어 2. 27.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제5-6흉추의 결핵성척추염 확진 받았으며 수술을 위하여 2. 27. 정형외과에 입원하였음. 입원 시 정상범위 소견이었으나 근력저하가 급속히 진행되어 OO요양병원으로 전원되어 9. 21. 퇴원 시까지 양측 하지의 완전마비인 척수손상으로 기재되었음. 이상을 종합할 때 2018. 9. 21. OO병원에서 작성한 장애진단서는 전적으로 객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장애등급은 흉수손상에 의한 양측 하지 완전마비로서 하지기능장애 2급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은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시장·군수는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 인정과 장애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보건복지부가 공인한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적인 고려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조사 권한(「행정심판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진료기록지 등을 전문 의료

기관에 송부하여 의뢰한 자문결과를 토대로 살피건대, 〇〇〇〇병원은 “2018. 3. 6. 경과기록지에 양측 하지의 근력이 3등급이라고 기록하고, 이것이 경협 미숙으로 인한 오판으로 해석되며 전혀 새로운 평가를 시도하지 않음.”이라는 감정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〇〇〇〇병원은 “제출한 자료 검토 결과 근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한 장애 등급 평가는 맞지 않으며, 2018. 3. ~ 2018. 8.까지 〇〇요양병원에서는 일관되게 하지근력 zero to trace로 평가되고 있어 장애등급 기준 2급 4호 두 다리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임.”이라는 의견을 자문 회신하였다.

-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재 상태를 반영한 의료기관의 장애진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심사를 재요청하여 그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등급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제2019-214호,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처분 취소(제3자)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3. 13. 청구의 ***에게 한 개발행위허가 처분, 2018. 12. 4. 청구의 ***에게 한 태양광발전시설허가처분(개발행위허가 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의 ***이 OO군 OO면 OO리 000-00번지(이 사건 제1허가지)에, 청구의 ***가 같은 리 산00-0번지(이 사건 제2허가지)에 신청한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사건 제1허가신청, 제2허가신청)에 대하여 2018. 3. 13.과 2018. 12. 4.에 각각 개발행위허가 처분(이 사건 제1허가처분, 이 사건 제2허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9. 8. 5. 이 사건 처분은 이격거리와 주거밀집지역 산정기준이 허위인 사실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함을 주장하며 이 사건 제1허가처분, 제2허가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3. 13. 청구의 ***에게 한 개발행위허가 처분, 2018. 12. 4. 청구의 ***에게 한 태양광발전시설허가처분(개발행위허가 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1) 이격거리 불법 조작 관련

태양광 시설의 허가 처분 시 신청부지의 경계선에서 인근 주택지역 부지 경계까지 떨어져야 하는 ‘이격거리’가 법적 이격거리(50m)에 턱없이 미달하여

허가할 수 없는 부지임에도 허위 조작하여 허가하였다.

2) 주거호수의 불법 허위조작 관련

발전시설 허가 기준에 의하면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의 경우는 100m 이상 이격하여야 하고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 50m 이상 이격거리를 적용해야 하나 본 마을은 주거호수가 37호의 주거밀집지역임에도 8호만을 인정하여 10호 미만인 50m 이격거리를 불법 허위조작하였다.

나. 피청구인

-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발전시설 허가기준의 이격거리는 「OO군 군계획 조례」 개정 (2018.7.31.) 후의 조례로 본 건 OO리 000-00번지와 OO리 산00-0번지의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는 관련 조례 개정 전(각 '17.10.19./ '18.5.24.) 전기사업(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득하였으므로 주택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발전시설까지 50m를 이격하여 허가하였다. OO리 산00-0번지의 경우 OO군 군계획 제1분과위원회에서 '남서측 경계부 기존 수림대 폭원 10m 존치'를 조건부 승인함에 있어서 사업 추진 시 OO면적에서 제외하여 완충지대로 보존토록 조건부 허가하였으며, OO군도시계획위원회의 사례처럼 심의기관과 자문기관의 결정은 행정청에 의해 구속력이 주어짐에 따라 조건부 의견에 대한 조치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사업주가 상기 완충지대에 대한 토지 분할승인 신청을 접수하였다.
- 2) 발전시설 허가 기준 중 '주거밀집지역'의 정의는 '10호 이상의 민가(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가구)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OO군 개발행위허가지침」 <제정2016.07.04.>) 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OO군 개발행위허가지침」 제3조제2항에 의거 '주택 산정 기준은 주택부지사이와 인접주택부지 사이의 거리가 100m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5.15.>는 조항에 적용 시점 전 (각 '17.10.19. / '18.3.28.) 전기사업(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신청하였고 주거밀집지역 산정에 따른 기준이 없어 해당 사업 예정부지 경계에서 100m 이내에 10가구 여부를 확인하여 이격거리를 산정하였다.

4. 관계법령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제1항
- 3) 「OO군 군계획 조례」제17조, 제17조의2
- 4) 「OO군 개발행위허가 지침」제3조, 제5조

5. 판 단

가.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현장검증 등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외 ***은 피청구인에게 2017. 12. 4. OO군 OO면 OO리 000-00 일원(이하 ‘이 사건 제1신청지’라 한다)에 아래 표와 같이 태양광발전 시설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이 사건 제1신청)하였다.

신 청 인	태양광발전시설 허가(m ²)			비고
성 명	지목	대지면적	허가면적	
***	전	14,326	14,077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1신청을 받은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의뢰,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2018. 3. 13. 청구외 ***에게 개발행위 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제1허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허가처분에 대하여 2019. 3. 23.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2) 청구외 ***는 2018. 6. 18. OO군 OO면 OO리 00-0 일원(이하 ‘이 사건 제2신청지’라 한다)에 아래 표와 같이 태양광발전 시설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이 사건 제2신청)하였다.

신 청 인	태양광발전시설 허가(m ²)			비고
성 명	지목	대지면적	허가면적	
***	임야	14,105	12,325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2신청을 받은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의뢰,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2018. 12. 4. ***에게 개발행위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제2허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2허가처분에 대하여 2019. 3. 25.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3) 청구인은 2019. 8. 2. 이 사건 제1허가처분과 제2허가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4) 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처분의 업무담당 공무원을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19. 12. 무혐의처분 되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먼저 이 사건 제2허가처분에 대한 청구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2허가처분일은 2018. 12. 4.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2허가처분에 대하여 2019. 3. 25.에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처분일부터 기산하여 법 제27조제3항이 정한 180일이 경과한 날이 역수상 분명한 2019. 8. 2. 제기되었고, 청구인이 법 제27조 제3항의 제척기간 내에 이 사건 제2허가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9.5.9. 88누5150 판결 참조) 이 사건 제2허가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2) 다음으로 이 사건 제1허가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제1허가처분도 청구인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만 청구인에게 법 제27조제3항 단서 규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전제하에 본안 판단을 하기로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①법적 이격거리(50m)에 턱없이 미달하여 허가할 수 없는 부지임에도 허위 조작하여 허가하였고 ②발전시설 허가 기준에 의하면 10호 이상의 주거밀집 지역의 경우는 100m 이상 이격하여야 하고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 50m 이상 이격거리를 적용해야 하나 본 마을은 주거호수가 37호의 주거밀집 지역임에도 8호만을 인정하여 10호 미만인 50m 이격거리를 불법 허위조작 하였다고 주장한다.

- 나) 먼저 관계 규정을 살펴본다. 「강진군 군계획 조례」([시행 2018. 7. 31.]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392호, 2018. 7. 31., 일부개정], 이하 ‘이 사건 조례’ 라 한다) 제17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제1항은 “영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소비용 목적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 받지 아니하며, 이격거리 산정 기준은 사업 부지경계에서 다음 각 호의 제한 해당사항 간의 최단거리로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는 “주거 밀집지역(10호 이상의 민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주택부지 사이와 인접주택부지 사이의 거리가 5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100미터 안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허가처분일은 2018. 3. 13.이고, 이 사건 조례의 시행일은 2018. 7. 31.인데, 이 사건 조례 부칙 제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3조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허가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조례 제17조의2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바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다) 다음으로, 「OO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OO군 훈령, 이하 ‘이 사건 훈령’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은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에서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안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50m 안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 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머지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훈령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이는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9571 판결 참조), 특히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정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제1허가처분이 이 사건 훈령 제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훈령은 대외적 효력이 없는 점, 이미 이 사건 제1허가처분의 수익자인 청구외 ***의 이익을 제거할 만큼 중대한 공익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이 2018. 12. 4. 청구외 ***에게 한 태양광 발전시설허가처분(개발행위허가 처분)에 대한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생활에 유익한 법무상식

행정소송 판결사례



사 건 ○○○○가단○○○○○
원 고 ○○○○
피 고 ○○○○

주 문

1. 피고 ○○○○은 원고에게 36,59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는 원고에게
가. 40,922,6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8. 5.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16. 12. 1.부터 별지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도로폐쇄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417,55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가. 별지목록 1 기재 토지의 소유자(그 중 1, 2번 토지에 대하여는 2/3 지분을 소유함. 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2. 19. 사망하였고, 망인의 아들인 원고가 2016. 9. 19. 상속인들과의 상속 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및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 나.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지목이 전 또는 대지, 답이었는데, 위 1번 토지는 1969. 10. 2.에, 5번 토지는 1974. 8. 26.에, 2, 4, 6번 토지는 1976. 6. 19.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3번 토지의 지목변경일은 불분명하나, 위 토지가 다른 토지들에 맞닿아 있으며 이 사건 토지가 모두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3번 토지 역시 1976년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다. 피고 대한민국은 위 무렵부터 2014. 5. 21.까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구 국도1호선 도로를 관리하였고, 국도1호선 도로를 대체할 ○○우회도로가 준공됨에 따라 피고 ○○○가 2014. 5. 22.부터 도로 관리권한을 인계받아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이로 인해 원고에게 그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혔거나 입히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에 따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통상의 경우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토지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감정인 ○○○의 임료감정결과에 따르면 도로편입 당시 지목인 전, 대지, 답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은 별지목록 2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피고들은 2011. 12. 1.(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6. 12. 1.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인 5년을 역산한 날)부터 2016. 11. 30.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피고 대한민국은 2011. 12. 1.부터 관리청 변경 전날인 2014. 5. 21.까지 합계 36,595,100원, 피고 ○○○는 관리청 변경일인 2014. 5. 22.부터 2016. 11. 30.까지 합계 40,922,606원, 자세한 계산내역은 별지목록 2 기재와 같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 1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 적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 ○○○는 2016. 12. 1.부터 위 토지에 대한 도로폐쇄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417,553원(2016. 11. 30. 무렵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한 달분 차임 합계액)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주장

1) 주장 요지

망인은 사망 시까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나주시 남평읍 광이리 0000에 살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국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 또 피고 대한민국이 도로확장공사를 위해 1984. 1.부터 1986. 11.까지 망인과 협의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나주시 남평읍 광이리 00-0, 00-0, 00-6 3필지를 협의취득한 바 있는데, 위 협의취득 당시 망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을 요구한 바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국도로 편입될 당시 망인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판단

갑 제10호증 기재, 증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일반국도 미불용지 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시청 건설과 담당자)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는 것에 관한 보상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 정당한 매수나 보상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공부상 자료가 없음
 - 증인 ○○○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요구를 받고 나서 확인해 본 결과,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개설되었던 무렵 함께 도로로 편입된 인근의 다른 토지 소유주들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 자료가 발견되었거나 현장 탐문결과 보상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자료를 발견하지도 못했고 현장 탐문을 통해서도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함
 - 그 후 ○○시는 이 사건 토지를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불용지로 판단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원고와 보상협의를 진행하였고, 국비로 내려온 1억 9,0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와 최종협의를 되지 않아 보상금 지급을 하지 못하였음
 - 피고 대한민국은 2012. 11.경 망인의 명의로 남아있던 나주시 남평읍 광이리 00-0 도로 43㎡(1974. 8. 26. 이미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음)에 관한 협의취득을 원고에게 요청하였고, 원고가 2012. 11.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보상금을 지급 받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바도 있음
-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주장

1) 주장 요지

피고 대한민국이 1976년경 망인의 동의나 보상도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였더라도, 망인과 원고가 그 후 오랜 기간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던 만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등 법리는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인 사용·수익권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하여 처분권능만 남는 민법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으로서 물권법 체계를 현저히 교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대법원2009. 3. 26. 선고 2009다228, 23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적어도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 등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타인에게 자발적으로 해당 부분을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대한민국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경우 망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나서부터 줄곧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해 온 것으로 보임).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점유취득시효 주장

1) 주장 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기 시작한 1976년 이전부터 피고 ○○○에게 관리권한을 이관할 때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으며, 피고 ○○○ 역시 위 자주점유를 승계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 등을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이와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 점유·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지적공부 등이 멸실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데 거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기재도 없고, 그 토지에 관하여 매입이나 기부채납 등 당시의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 등에서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았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미제출 사유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가능성을 쉽게 수긍하여 무단점유에 대한 증명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8845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97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는 멸실된 적이 없이 보존되어 있는데 그 공부에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 취득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피고들은 1969년 내지 1976년경부터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반면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다른 토지의 경우 도로편입에 따른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 재산으로서 적법한 취득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로써 위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자주 점유의 추정 은 깨어졌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관리권한을 인계받은 데 불과하다는 주장(피고 ○○○)

1) 주장 요지

사업시행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에게 국도에서 폐지된 도로의 관리권한만을 인계하였다. 즉 피고 ○○○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사용수익권 및 관리감독권)를 이전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판단

피고 ○○○가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권한을 인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구 국도1호선 일부 구간을 도로로 사용하면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하고 있는 만큼 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관리 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생활법률 상담사례



형님 부부가 사망하여 10살인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불쌍한 조카를 제 양자로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를 유지하는 일반양자를 입양 할 때에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반양자 입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

- ☞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삼촌이 어린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었는데, 미성년후견인인 삼촌이 자신의 재산관리에 관한 후견감독을 회피할 목적으로 입양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입양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 입양신고

- ☞ 미성년자를 일반양자로 입양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 아내가 남편인 저의 동의 없이 혼자 입양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네, 일반양자를 입양한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본인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 명의의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에 본인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는 입양의 일반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취소청구의 소의 제소기간

☞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배우자는 입양의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입양취소의 신고

☞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 입양취소의 효과

☞ 입양취소의 효력은 입양성립일로 소급하지 않고, 입양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생깁니다. 따라서 취소되기 전의 입양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로 소멸되고, 미성년자인 양자에 대해서는 입양으로 종료되었던 종전의 친권이 부활하게 됩니다.

☞ 입양이 취소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혼한 남편의 아이를 일반양자로 입양하여 제 아이로 키우던 중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파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과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협의에 의해 파양할 수 있고, 파양 신고를 함으로써 파양의 효력이 생깁니다.

◇ 파양의 의미

- ☞ “파양”이란 입양성립 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는 입양 당사자의 사망만으로 해소되지 않고,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됩니다.

◇ 파양 협의

- ☞ 우리판례는 당사자인 양친이 부부인 때에는 부부의 공동입양의 원칙에 비추어 파양의 경우에도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친의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일방이 단독으로 파양할 수 있습니다.

◇ 파양 신고

- ☞ 파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파양의 신고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파양의 효과

- ☞ 파양을 하면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양자의 신분에서 발생했던 양친과의 사이의 법률효과(친권관계, 부양관계, 상속 관계 등)는 소멸합니다.



**가정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입양시키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2012. 8. 5.부터 시행되는 「입양특례법」은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친생부모의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생 직후의 아동은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양숙려제의 취지

☞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합니다.

☞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 입양기관은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 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
-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
- 입양절차
- 「입양특례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청구



저희 부부는 한국인 입니다. 외국인 자녀를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내에서 한국인 양부모가 외국인 자녀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 국제입양의 신고방식

☞ 국제입양의 신고방식에 관해서는 「국제사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되어 법률행위의 준거법 또는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 “행위지법”이란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장소의 법률을 말합니다.

☞ 입양의 신고는 입양의 준거법인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양친의 본국법에 따라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대한민국 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 국내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 국내에서 외국인 양친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외국인의 본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 있지만, 입양 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던 중 입양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입양할 부모로서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을 하고자 할 때 양부모의 자격요건은 「입양특례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2012. 8. 5.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복리를 우선하고, 양자인 아동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양육 받도록 하기 위해 양부모의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 양부모의 자격요건

☞ 양부모가 될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부모가 될 사람이 아동학대 · 가정폭력 · 성폭력 ·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부모가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의 연령이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일 것(「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 단, 독신자의 경우 35세 이상, 아동과의 나이 차이 50세 이하 일 것

☞ 양부모가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다음의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 입양과 파양의 요건 · 절차 및 효과
-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 자녀의 양육방법
-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재혼을 했는데, 아이가 현재 남편과 성이 달라 혹시라도 학교에서 놀림을 받을까 걱정입니다. 전 남편의 아이를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를 입적시키고, 남편의 성을 따르게 하고 싶으면 친양자로 입양하면 됩니다. 「민법」상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어서 친양자로 입양을 하면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 외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 일반양자의 성과 본

- ☞ 일반양자 입양절차로 입양된 양자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 다만, 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양자의 성과 본도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의 성과 본

- ☞ 친양자 입양절차로 입양된 양자의 성과 본은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 「입양특례법」에 따른 양자의 성과 본

-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 양자가 된 경우 입양된 양자의 성과 본은 입양한 양부모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자녀를 입양한 가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양자를 입양한 사람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20일의 입양휴가가 주어집니다.

이와 더불어 입양기관을 통해 자녀를 입양한 가정은 추가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양육보조금, 사회복지서비스, 입양비용 및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양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입양자녀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1명인 경우: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입양자가 있는 해당 거주자에 한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입양휴가제: 제2의 출산인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출산휴가와 같은 입양휴가제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입양휴가제의 기간은 20일입니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 양육보조금의 지급

- 양육수당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7세가 될 때까지[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월 15만원씩 지원 합니다.
- 의료비 : 다음의 비용 중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진료 · 상담 ·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드는 비용으로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 상담 ·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

2020년도		
지원대상		지원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8세가 될 때까지 [다만, 중지일(생일)이 속 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1명당 월627,00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외		1명당 월551,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존 장애등급 1급~3급인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장애등급이 4급~6급인 사람

☞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입양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위의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입양아동의 의료급여지원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1종 의료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만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만 20세의 생일이 도래하는 날이 속한 이전 달 까지 의료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20세가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날이 속한달의 이전 달 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이 된 사람입니다. 늦게나마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친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이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부모님과 관련된 정보는 친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친부모님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권자

☞ 입양기관을 통해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친생부모의 동의

☞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 공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 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은 친생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말합니다.
- 다만,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입양정보 공개 통지를 받은 친생부모는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친생부모는 인적사항의 각각에 대하여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에 따른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친생부모의 소재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양기관의 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을 통하여 요청합니다.





친양자 입양과 일반양자 입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반양자 입양에 따라 입양된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입양한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양자는 입양한 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입양한 부모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종래 맺어져 있던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이 허락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입양한 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친양자의 성과 본도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 일반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구별

구 분	일반양자	친양자
근거	「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성립요건	협의로 성립	가정법원의 허가
양자의 성·본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종료
입양의 효력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이외는 유지됨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법무
단신**

‘사무장 병원’의 임금·퇴직금 지급 주체는 ‘사무장’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주체는 명목상 대표인 의료인이 아니라 실제 경영자인 사무장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모씨 등 16명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8다26351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제약회사를 퇴사한 정씨는 충남 서천군에 아내 명의로 건물을 매수한 뒤 의료 시설을 갖추고 지인인 의사 A씨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정씨는 이 병원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A씨 명의 통장과 인장을 가지고 병원을 경영했다. 정씨는 병원 실경영자로서 최씨 등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최씨 등은 “형식상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정씨가 채용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정씨가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며 급여를 지급했다”며 “미린 임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정씨가 운영한 것과 같은 사무장 병원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주체가 명목상 운영자인 의사인지 실제 병원을 경영한 사무장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해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명목상 대표인 의료인과
근로계약 체결했더라도
‘실질적 근로관계 성립’
사무장이 지급의무 있다

이어 “사무장 병원에 있어서 비록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며 “이는 사무장 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 사이의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2항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운영한 사무장 병원에서 최씨 등은 형식적으로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씨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최씨 등을 직접 채용하고 이들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급여를 지급했다”며 “정씨와 최씨 등 사이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따라서 정씨는 최씨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사무장 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2항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임금 등 지급의무 역시 의료인에게 귀속된다”며 “사무장 정씨는 최씨 등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토바이 타고 출장을 교통사고 사망... '중양선 침범' 원인이라도 산재 해당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다 중양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중양선 침범이 사고의 원인이라도 도로 상황이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산재보험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 6598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다가 경북 의성군에 있는 2차선 국도에서 중양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중형차와 충돌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배우자인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고 원인이 된 A씨의 중양선 침범행위는 산재보험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A씨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B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로 인한 충돌 부위, 상대 차량의 사고기록장치에 나타난 조향각과 제동시점 등에 비춰보면 A씨의 오토바이가 중양선을 침범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갑자기 내리막과 함께 우측 급커브길이 시작돼 3년 동안 중양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고, 경찰 역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언급한 점에 비춰보면 이 도로는 구조상의 위험성으로 인해 도로환경적으로 사고 유발요인을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대 차량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중양선을 침범한 거리도 크지 않고, A씨가 다소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로 과속을 했는지 등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며 “따라서 A씨의 사망은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A씨의 사망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이웃 점포 피해 입었다면

상가 임차인의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불이 나 인근 건물 점포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최초 불이 난 상가의 임차인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김지영 판사는 A씨의 보험사인 B사가 C씨와 C씨의 보험사인 D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가단5115910)에서 최근 “C씨와 D사는 연대해 A사에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경기도 파주의 한 샌드위치 판넬 구조 가설건물에 세를 들어 신발도소매업을 했다. 그런데 2017년 9월 A씨의 가게 옆 상가 건물 1층을 임대해 가방·잡화 소매업을 하던 C씨의 가게에서 불이 나 A씨의 가게로 번졌다. 이에 보험사인 B사는 재산손해와 화재 발생에 따른 점포휴업손해 등으로 A씨에게 보험금 84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B사는 화재가 C씨의 잘못으로 발생했다며 C씨와 C씨의 보험사인 D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민법 제758조 1항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말하는데, 그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그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돼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민법 제758조 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파주 경찰서·소방서의 화재사고 조사 결과 A씨의 점포 내부에서 화재 원인이 작용했을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C씨 점포의 창문 상단에 함석판이 설치돼 있는데 이 함석판 양 끝단에 전선이 통과하는 3개 지점에서 합선 흔적이 발견되고 그 외 부위의 전기배선과 연소 잔해에는 화재원인으로 작용했을 만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씨는 점포 점유자로서 건물 외부 전기 배선을 설치할 때 보호관을 함께 설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 함석판과의 마찰로 피복이 벗겨진 전기 배선 부분이 빗물 등에 노출돼 화재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C씨와 C씨의 보험사인 D사는 연대해 점포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 점포와 C씨 점포 사이의 이격거리가 짧은 점과 A씨의 점포가 판넬구조로 이뤄져 화재 확산이 용이했던 점 등을 고려해 C씨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법무
단신**‘비서 성추행 혐의’ 호식이두마리치킨 前 회장, 징역형 확정**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492).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자신의 비서로 일하던 A씨와 식사하며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를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고소를 취하했지만, 목격자 진술과 CCTV자료로 수사가 이뤄졌다.

1심은 “최 전 회장은 업무상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A씨를 주말 저녁식사 자리에 나오게 한 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까지 했고, 지속적으로 A씨를 타격하며 본인의 책임은 회피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2심도 “최 전 회장의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회식서 과음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회사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한 뒤 귀갓길에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두353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팀장인 A씨는 2016년 4월 회사 행사를 끝내고 팀원들과 회식을 가졌다. A씨는 식당에서 진행된 1차 회식을 마치고, 오후 9~11시 노래방에서 2차 회식을 가졌다. 1,2차 회식은 모두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회식을 마친 A씨는 오후 11시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했다. 그러다 같은 날 오후 11시35분께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하려고 인천의 한 지하철역 인근 왕복 11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부인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회사 밖에서의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업무품평회 마치고
마련한 회식자리서

근로자의 주량 초과 음주가

사고의 주된 원인

이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회사 중요행사로서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품평회를 마치고 같은 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사망했다”며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사용자의 전반적인 지배·관리하에서 이뤄진 회식에서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능력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그로 인해 사고가 났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무단횡단을 한 것이 과음으로 인한 판단능력 장애에 따른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A씨가 왕복 11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회식 과정 또는 그 직후의 퇴근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경력직 입사한 상사가 신입사원 성추행한 경우도...

경력직으로 입사한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언행을 한 것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심은 두 사람의 입사 간격이 2개월에 불과해 업무상 위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경력직과 신입사원임을 고려해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서 이뤄진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9872).

고씨는 경력직으로 콘서트 영상제작 업체 A사 과장으로 입사했다. 그는 신입사원이던 B씨에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 농담을 일삼았다. 2016년 10~11월에는 B씨에게 성행위를 암시하는 듯한 언행을 했다. 그는 B씨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뒤에서 어깨를 톡톡 두드린 뒤 뒤돌아보는 피해자를 쳐다보며 혀로 입술을 핥거나 불쾌한 소리를 내는 등 B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고씨가 업무 관계로 인해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경력직 사원으로 과장으로 근무했으며 B씨는 신입사원으로 고씨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하며 그로부터 업무를 배우고 지시·감독을 받았다”며 “고씨의 행위로 B씨는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의 행위는 20대 중반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며

“나아가 두 사람의 관계나 추행행위의 행태, 경위 등에 비춰보면 고씨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고씨는 경력직으로 B씨보다 2개월 일찍 입사했다. 업무를 지시하는 위치이기는 하지만 인사나 업무 수행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가 크지 않다”며 “고씨가 B씨보다 상급자라 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한 상태에서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민선 시장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 미지급은 정당”

선거로 뽑힌 시장에게 공무원이 받는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김윤주 전 군포시장이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21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전 시장은 1998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29일까지, 2010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29일까지 총 16년간 군포시장으로 일했다. 김 전 시장은 임기를 마친 후 지난해 9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김 전 시장이 선거에 의해 취임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서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전 시장은 공무원연금법이 합리적 근거없이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해 마련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임기가 4년으로 제한돼 있고 계속 재임도 3기로 제한돼 있어 총 재임기간 내지 퇴직시점을 미리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차기 선거를 통한 연임 가능성으로 직무의 충실성이 자동적으로 담보되고 총 재임기간을 미리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임명권자에 의해 임명되고 정해진 기간이나 임명권자의 해임 등에 의해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다른 특수경력직공무원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법이 법적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을 다른 특수경력직 공무원 등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
단신

“양육비 사용내역 분기별로 공개토록 하는 것은 부당”

2016년 결혼한 A씨 부부는 이듬해 1월 딸 C양을 낳았다. 하지만 성격 차이와 자녀 양육문제로 둘은 자주 다투고 2017년 11월 이혼소송 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본인으로 지정하고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1심은 “A씨가 C양을 주로 양육했고,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된 결정적 다툼은 아이 양육방식에서의 차이와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부족 때문으로 B씨는 아이 앞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며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다. 또 “B씨는 C양이 성인이 될때까지 A씨에게 매달 양육비 50~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며 A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B씨에게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2심은 양육비에 관한 판단을 달리했다. 양육자로 지정된 A씨에게도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한편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양육비를 어디다 썼는지 등 사용내역을 B씨에게 분기별로 알려주라고 한 것이다.

2심은 “C양의 양육비로 A씨는 매달 30만원, B씨는 50만원을 각각 부담하라”면서 “양육비 지급 방법으로 △A씨 이름 또는 아이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A씨와 B씨는 매달 해당 계좌에 양육비 분담금을 각각 입금할 것 △체크카드를 통해 양육비를 사용하되 A씨가 B씨에게 지출내역이 나타난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매년 분기별로 고지하라”고 판결했다.

상고심에서는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양육비 분담 비율과 집행 방법을 어느 선까지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양육비의 사용방법을 특정하는 것은 아이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할 A씨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A씨에게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B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둘 사이에 분쟁을 예방하는 측면보다 추가적인 분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 주문은 명확해야 하고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며 “2심은 A씨 또는 C양의 명의의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A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되 C양의 명의를 부기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A씨와 C양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라는 것인지 의미를 명확하게 알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양육권을 가진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부담할 것을 지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재판 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가정법원으로서의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무
단신

공짜술에 성폭력 시도까지… 국토부 과장 실형 확정

수백만원어치 공짜 술을 얻어먹고 주점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국토교통부 과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준강간미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간부 P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 2349).

P씨는 2017년 건설환경설비업체 대표 A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500여만원어치의 술을 공짜로 얻어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P씨는 주점에서 만취해 쓰러진 여성종업원을 간음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P씨는 공직자로서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A씨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또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 여성을 간음하려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 관련 소비자에 배상책임 없다”

배터리 폭발 문제로 단종된 삼성전자 휴대전화 ‘갤럭시노트 7’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김모씨 등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802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2016년 8월 갤럭시노트7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하고 이후 유사한 폭발 사고가 잇따르자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리콜을 발표했다. 김씨 등 소비자들은 갤럭시노트7 리콜 절차에 문제가 있어 정신적, 재산적, 시간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품에 대한 사용권, 선택권, 부품 및 AS를 받은 권리 등을 박탈당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리콜 조치에 불법행위를 구성할 만한 어떠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리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원고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배상되어야 하는 정신적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리콜 조치는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해 원고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더 큰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리콜 조치와 관련해 발생한 원고들의 통상적인 시간적·경제적 손해 또한 법적으로 배상되어야 하는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휴대폰의 결함은 인정하지만, 리콜 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생활에 유익한 법무상식

최근 개정 시행법령



[5월 8일 시행법령] 게임물 사행적 이용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5. 8.] [대통령령 제30604호, 2020. 4. 7.,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의 범위에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을 추가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구매한도 등에 제한을 두고, 일반게임제공업자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월 12일 시행법령] 벤처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0. 5. 12.] [법률 제16997호, 2020. 2. 11., 일부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 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벤처기업 요건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소속 연구원, 공공기관 직원 등이 벤처기업 창업 활동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창업 휴직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벤처기업 확인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 및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 요건 중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보증이나 대출을 받고 그 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도록 하던 요건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도 벤처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함(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

- 나.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중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의 연구원, 공공기관의 직원 등을 추가함(제16조).
-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전담조직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3 신설).
- 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 벤처기업 확인 취소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두도록 함(제25조의4 신설).



[5월 26일 시행법령] 원자력 발전 방사선 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 조치가 강화됩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0. 5. 26.] [법률 제30721호, 2020. 5. 26., 일부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발전용원자로 등에 대한 건설·운영 허가 또는 해체 승인 전에 방사선 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구역의 주민 의견수렴을 보다 광범위하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해체 계획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방사선 피해 예방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구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주관하도록 하고,

주민 의견수렴 업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월 19일 시행법령]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80호, 2020. 5. 19., 일부개정]

개정이유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정관 기재사항을 추가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비용을 보조할 수 근거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양육, 가족교육·상담 등에 관한 정보를 가족구성원에게 제공하도록 함(제11조).
-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5조제4항).
- 다. 가족실태조사의 실시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제20조제1항).
- 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정관 기재사항 및 정관변경 절차를 명시함(제34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35조제6항 신설).

최근 제정 자치법규



[5월 21일 시행]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 2020. 05. 21.] [2020-05-21 조례 제 5067호,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20. 5. 21.)

제2조(정의) (본조 신설 2011. 12.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1. 12. 27)

1. “법정적립액”이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2. “의무예치금액”이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5조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 발생한 운용수입을 말한다. (신설 2011. 12. 27) (개정 2017. 9. 28.)

제3조(기금의 설치) (신설 2011. 12. 27)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재난대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신설 2011. 12. 27) (개정 2017. 9. 28.)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9. 11. 13, 2011. 12. 27)

1. 법 제67조에 따른 도의 법정적립금 (개정 2009. 11. 13, 2011. 12. 27)
2. 이자 등 기금의 운용수입(개정 2011. 12. 27)
3.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09. 11. 13., 2017. 9. 28.)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조 전문개정 2009. 11. 13) ① 기금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제2조제1호의 법정적립액 중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의무예치금액으로 관리하고,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조 개정 2011. 12. 27) (개정 2017. 9. 28.)

② 제1항의 의무예치금액 및 여유자금은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7., 2017. 9. 28.)

③ 도지사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1. 기금의 수입·지출 및 안전보관
2. 융자금의 대출 상환관리

④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 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3, 2011. 12. 27., 2017. 9. 28., 2020. 5. 21.)

1. 공공분야 (개정 2020. 5. 21.)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모든 재난관리 활동 (개정 2020. 5. 21.)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개정 2020. 5. 21.)

다.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보강 사업 및 정보체계의 구축 (개정 2020. 5. 21.)

라.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개정 2020. 5. 21.)

마.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 (개정 2020. 5. 21.)

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개정 2020. 5. 21.)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개정 2020. 5. 21.)

아.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개정 2020. 5. 21.)

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개정 2020. 5. 21.)

차.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5. 21.)

2. 민간분야 (개정 2020. 5. 21.)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위험시설의 보수·보강·철거 (개정 2020. 5. 21.)

나. 안전점검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수당 등 경비 (개정 2020. 5. 21.)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5. 21.)

제7조 (삭제 2017. 9. 28.) ① (삭제 2017. 9. 28.)

② (삭제 2017. 9. 28.)

③ (삭제 2017. 9. 28.)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7. 9. 28., 2020. 5. 21.)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 실장·국장 (개정 2017. 9. 28., 2020. 5. 21.)
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09. 11. 13., 2015. 12. 31., 2017. 9. 28.)
-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2011. 12. 27)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조명 개정 2020. 5. 21.)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9. 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9. 2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실장·국장이 된다. (개정 2020. 5. 2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9. 11. 13, 2014.12.26., 단서 삭제 2017. 9. 28., 개정 2020. 5. 21.)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국장·과장 (개정 2020. 5. 21.)

2. 기금 등의 재정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20. 5. 21.)

3. 방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20. 5. 21.)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1.)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연재난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5. 12. 31., 2017. 9. 28., 2020. 5. 21.)

제11조 (삭제 2017. 9. 28.) (삭제 2017. 9. 28.)

1. (삭제 2017. 9. 28.)

2. (삭제 2017. 9. 28.)

3. (삭제 2017. 9. 28.)

4. (삭제 2017. 9. 28.)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7. 9. 28.)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9월 10일까지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제3조의 총괄기금관리관(이하 “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개정 2017. 9. 28.)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삭제 2009. 11. 13)
4. (삭제 2009. 11. 13)

③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개정 2017. 9. 28.)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조 신설 2009. 11. 13)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

[5월 21일 시행]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 2020. 05. 21.] [2020-05-21 조례 제 5072호,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개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정책의 추진목표와 추진과제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식개선 등에 관한 교육)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 ①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
 -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
 -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시·군, 교육기관, 의료기관, 경찰청,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누리집과 디지털 성범죄 방지 표어(슬로건)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월 21일 시행] 전라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0. 05. 21.] [2020-05-21 조례 제 5069호,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20조 등에 따라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협의회”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평생교육진흥 및 평생교육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를 말한다.
3. “평생교육진흥원”이란 도지사가 지역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란 도지사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수립·시행하는 계획을 말한다.
5. “문해교육”이란 비문해자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임무) ① 도지사는 모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 소속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문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는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평생교육 사업에 협의·지원할 수 있다.

제4조(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감과 협의하여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 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3.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4. 문해교육사업 운영
5. 그 밖에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제6조(장애인평생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험가입 또는 공제 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교육진흥원

제8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10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도 및 교육청 평생교육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 도 보건복지업무 담당 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1.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2.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의3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임원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협의회 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회 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4조(협의회 위원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평생교육진흥원 설치)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둔다.

②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문해교육

제16조(문해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적·성별·직업을

불문하고 비문해·저학력자의 문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육 실시 기관과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4. 문해교육 교원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5.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6.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② 도지사는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남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17조(문해교육센터) 도지사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9조2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 제18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사업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원 운영과 관련하여 진흥원의 업무, 회계서류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평생교육진흥 관련 보조금 지원·관리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생활에 유익한 법무상식

솔로몬의 재판

성희롱 편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엄탕해(남)는 같은 원룸 건물 옆방에 사는 어굴애(여)에게 3주 동안 6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내용이 담긴 편지를 그녀의 방 출입문에 꽂아두었습니다.

어굴애는 엄탕해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엄탕해를 고소하기로 하는데요. 과연, 엄탕해는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 참고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1. 검사 :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탕해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옆방에 사는 피해자 어굴애에게 편지 등을 보내기로 마음먹었고 이를 6차례에 걸쳐 보냈기 때문에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2. 엠탕해 : 제가 저질스런 표현으로 어굴애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검사가 처벌조항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로 한정해야 합니다. 저는 단지 편지를 어굴애의 방 출입문에 직접 꽂아 둔 것뿐이지,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 엠탕해 : 제가 저질스런 표현으로 어굴애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검사가 처벌조항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로 한정해야 합니다. 저는 단지 편지를 어굴애의 방 출입문에 직접 꽂아 둔 것뿐이지,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됩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따라서 해당 법조항으로는 엄탕해씨를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유사한 사례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였으나, 이는 해당 행위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처벌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지 그 밖에 다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편지의 내용이나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정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위 사례와 같거나 유사한 행위로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불쾌함을 주거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